

제 호

결합전문기관 지정서

1. 법인·단체·기관명 :
2. 대 표 자 :
3. 주 소 :
4. 유효기간 :

위의 법인·단체·기관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
/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직인